

건축공사 표준품셈 및 적산기술 해설 (2)

(일반 사항)

金 文 採 建設研究所

목 차

2-1	표준품셈의 목적, 적용범위 및 적용방법	2-9	품의 할증
2-2	수량계산과 단위	2-10	정부시설공사의 설계서 작성 요령
2-3	재료의 할증율	2-1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위 표준
2-4	소운반 거리	2-12	금액의 단위표준
2-5	지반의 추정 및 토량환산계수의 적용	2-13	재료의 단위중량
2-6	시멘트 공대 및 공드랍과 기타 발생재의 처리	2-14	하물자동차의 적재량
2-7	노임	2-15	잡비율
2-8	주요 자재	2-16	재료의 단위당 가격의 기준

2-1. 표준품셈의 목적, 적용범위 및 적용방법

정부공사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의 적정 산정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민간공사에서의 적용여부는 개인의 재량사항에 속하나, 현실적으로 표준품셈 이외에 공사비 산정을 위한 다른 기준이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준품셈은 정부공사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工種) 및 공법(工法)을 기준하였으므로, 지역이나 기후의 특수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적용해야 한다. 건축공사는 건축주의 의도, 공사규모, 시공장소, 기후 및 공사기간, 재료 및 노무자의 구득용이성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공종, 공법을 사용하게 되고, 인간의 노동능력도 사회, 경제, 생리, 심리 그의 정책, 행정,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또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되는 공법이나 신공법 및 새로운 자재의 개발로 인해 새로운 품셈이 요구될 때도 있으므로,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종 사업을 발주하는 각 중앙관서(특별시, 시, 도 포함)장의 책임하에 표준품셈의 제정목적에 부합되게 적의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 이 경우에는 품셈의 개정, 보완을 위하여 그 자료를 건설부(국립 건설연구소, 건축기준과. (967-0274)에 제출해야 한다.

2-2. 수량계산과 단위

(1) 수량

수량은 사용개소별로 설계도, 시방서에 따라 적산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뽑은 수량이 설계수량이고, 이것에다 시공로스(loss)를 가산한 것이 실재의 소요수량이며, 내역서에서는 후자의 수량이 채용된다. 그 외 숫자로 표시하기 어려운 것은 일식(一式)으로 표현한다.

수량계산은 일반 수학 계산방법과 같이 하되,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하고, 1회 곱하거나 나눌 때 마다 소수 2 자리까지 구한다. 면적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되 삼사법(三斜法)이나 프라니미터로 할 수 있다. 단 프라니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입적계산은 의사공식(擬似公式)으로 하고, 토사면적은 양단 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적 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거리 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입적과 면적은 그 수량이 전체 수량에 비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량(量)이므로로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①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 ② 리벳트나 보울트 구멍
- ③ 모따기 또는 물구멍
- ④ 이음줄눈의 간격
- ⑤ 포장공중의 1개소당 0.1m² 이하의 구조물 자리
- ⑥ 철근콘크리트 중의 철근 등

(2) 단위

수량의 단위는 공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품셈을 이용하여 재료비나 노무비 등 공사비의 산출을 용이하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견적에 이용하는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하고, 금액의 단위는 원으로 한다. 실 사회에서는 척관법도 사용하고 있으나, 이 기준에는 미터법만으로 되어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미터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고치는 주요 환산표는 다음과 같다.

- 1 자(尺) = 0.303M (1.0M = 3.3尺)
- 1 간(間) = 1.8182M (1.0M = 0.55間)
- 1 立坪 = 6.0105M³ (1M³ = 0.1664立坪)
- 1 石(목재) 0.2782M³ (1M³ = 3.5937石)
- 1 坪(Py) = 3.3058M² (1M² = 0.3025坪)
- 1 才(才) = 3.33917dM³ (1M³ = 299.475才)

2-3. 재료의 할증율

품셈에 할증율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공사용 재료는 일반 할증율을 볼 수 있다. 즉, 시공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시공 loss가 생기므로 현장에서의 재료 소요수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적산한 설계수량에다 재료별로 다음의 비율로 시공loss를 감안하여 구한다. 그중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멘트	2~3%	강 관	10%
모래	10~12%	대형 형강	7%
자갈	3~5%	소형 형강	5%
이형철근	3%	리벳	5%

목재	각재	5~10%
	판재	10~20%
합판	일반용합판	3%
	수장용합판	5%
텍스, 보오드류		5%
유리		5%
도로		2%
타일		3~5%
보통 벽돌		3%
시멘트 벽돌		5%
속빈시멘트블록		4%
기와		5%

2-4 소운반 거리

품에서 규정된 소운반이라 함은 20m수평거리 이내의 운반을 말하며, 소운반에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로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품에는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품셈에 소운반 거리 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운반 거리 품을 계상해야 한다.

2-5 지반의 추정 및 토량환산계수의 적용.

지하 지반은 토질조사 시험에 의해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량이 소 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 상태에 따라 추정 설계하고, 시공중 확인된 상태에 따라 설계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토량의 환산계수는 표준품셈에 따를 수 있다. (건설부발행 표준품셈 p 65~66 참조)

2-6 시멘트 공대 및 공드람과 기타 발생재의 처리

시멘트 공대 및 공드람과 기타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해야 하며, 시공 도중 발생되었거나 수량의 변동을 가져 왔을 경우에는 설계변경해야 한다.

품 명	공제율	비 고
시멘트 공대	90%	공대의 시중 도매가격
공드람	100%	공드람의 시중 도매가격
사용고재(使用古材) 및 기타 발생재	발생량	시중가격

2-7 노 임

노임은 정부(재무부) 책정의 노임단가로 한다. 정부책정의 노임단가는 최고한도액을 설정한 것이며, 1일 8

시간을 기준(단, 근로기준법 제 43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직종 즉, 석공, 활석공, 갱부, 발파공, 잠수부, 잠항공, 리벳공, 착암공, 드릴공, 중기 운전공, 목도, 특수 비계공은 1일 6시간으로 함)하였고, 책정되지 않은 직종은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할 수 있으며, 책정하기 곤란한 직종으로서 특히 정할 필요가 있는 노임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품셈도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 된 것이므로 정부 노임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77년도 정부 노임단가 중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직 종	임금(원)	직 종	임금(원)
건축목공	2,550	내장공	2,460
형틀목공	2,360	미장공	2,510
비계공	2,360	도장공	2,380
석공	2,890	샷시공	2,430
벽돌공	2,320	도배공	2,290
블록공	2,310	스레이트공	2,320
타일공	2,630	온돌공	2,580
출눈공	2,230	철근공	2,290
기와공	2,590	여자인부	1,000
콘크리트공	1,870	가구공	2,410
철골공	2,620	유리공	2,200
방수공	2,540	바이브레이타공	1,830
위생공	2,570	함석공	2,340
샷터공	2,570	용접공	2,650
연돌공	2,620	리벳트공	2,520
기능공	1,660	퍼티도포공	1,900
특별인부	1,800	선반공	2,410
보통인부	1,500	루우평공	2,010

2-8 주요 자재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보어라) 및 기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특히 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이거나 긴급사태 등으로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시멘트와 철근등을 관급으로 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조달청이 사실상 관급할 수 없거나 적기 공급이 어려울 때

나. 공사현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급함이 국가에 불리할 때

다. 관급할 자재의 총액이 1,000,000원 미만인 때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여,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KS 규격품을 우선한다.

2-9 품의 할증

품셈상의 품은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작업이 행해진다고 보고 정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품을 할증할 필요가 있다.

(1) 고층 특수 건물공사에서 고소(高所) 작업 및 기타의 능률저하를 고려하여 표준품셈에서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품을 할증할 수 있다. 우리나라 품셈에는 몇 %를 할증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고, 참고로 일본 건설성 노무자 임금규정을 보면, 이 경우에 10%이내로 할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10m² 이하의 소 단위 건축공사에서는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3) 공사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지세별로 품을 할증할 수 있다. 즉

산악지 10~50%

도서지구 10~50%

(지세구분 내역은 건설부 발행 표준품셈 p43 참조)

(4) 위험 할증

(가) 활선 근접작업 140KV 이상 (4m 이내) 30%

60KV 이상 (3m 이내) 30%

7KV 이상 (2m 이내) 30%

600KV 이상 (1m 이내) 30%

(나) 군 작전지구내에서 폭발물 위험지역등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에는 20% 할증할 수 있다.

(5) 열차 운전빈도별 할증

본선(本線)상의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중 열차 통과회수에 따라 품을 할증할 수 있다.

공종별	작업중 열차통과회수	11~25회	26~40회	41~50회
복선	일반 할증율	10%	15%	20%
3간	궤도상부에 사다리작업시	20%	30%	50%
단선	일반 할증율	15%	20%	30%
3간	궤도상부에 사다리작업시	30%	40%	60%

(6) 철도 역 구내 입환별 할증율

구 분	할증율	비 고
입환작업이 특히 빈번한 구내	20%	구내배선이 6선이상
기타 "역" 구내	10%	구내배선이 5선이상

(7) 유해별 및 기타 할증

(가) 고온, 고압기기 접근작업 30%

(나) 고열, 위험물, 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20%

(다) 정화조, 축전지실, 제비실내등 유해 깨스가

발생하는 장소 10%

(라) 동일 장소에 수종(數種)의 중기 가동으로 작업장소의 축소, 소음, 위험등 작업능률 저하가 현저할 때는 50%까지 품을 가산할 수 있다.

(8) Pert/CPM 공정에 의하거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능률 저하를 20%까지 계상할 수 있다.

2-10 정부 시설공사의 설계서 작성 요령

(1) 정부 시설공사의 설계서 작성순서 및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표지, ② 목차, ③ 설계설명서, ④ 일반시방서, ⑤ 특별 시방서, ⑥ 예정공정표, ⑦ 동원인원 계획표, ⑧ 예산서(내역서), ⑨ 일위 대가표, ⑩ 자재표, ⑪ 중기사용료 및 잡비계산서, ⑫ 수량계산서, ⑬ 설계도면, ⑭ 설계 지침서(원본), ⑮ 산출기초(원본)

이 중에서 ⑦ 동원인원 계획표 ⑩ 자재표는 보통 생략하는 수도 있다.

(2) 설계서의 크기는 16절지로 하고 횡으로 누워서 사용한다.

(3) 변경설계서 작성시의 원 설계는 적색, 변경설계는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하고, 동일한 상부에 원 설계(적색), 하부에 변경설계를 기재한다.

(4) 설계변경 도면은 변경부분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다만 식별이 곤란할 때는 별도로 작성한다.

(5) 도면과 시방서에 재종, 공범등의 명기가 누락된 사항은 적산과정에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보완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당연히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2-1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위 표준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위 표시는 다음 표에 따르고, 다음 표에서 지정한 소수위(小數位)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단, 1위 대가표 또는 설계기초 계산 과정에서는 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해서는 C. G. 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는 그 가격에 따라 의사품종(擬似品種)의 소수위의 정도를 채용토록 한다.

種 目	규 격		단위수량		비 고
	단 위	소 수	단 위	소 수	
공 사 연 장	m	2위	m	단위한	대가표에서는 2위까지 이하 버림
공 사 목 원			m	1위	
적 공 인 부			인	2위	
공 사 면 적			m ²	1위	
용 지 면 적			m ²	단위한	
토 적(높이·나비)			m	2위	
토 적(단 면 적)			m ²	1위	단면적

토 적(체 적)			m ³	2위	체 적
토 적(체적합계)			m ³	단위한	집계체적
매	cm	단위한	m ²	1위	
모 래 · 자 갈	mm	단위한	m ³	2위	
조 약 돌	cm	단위한	m ³	2위	
건 치 돌 · 깬 돌	"	"	"	"	
"	"	"	개	단위한	
野 面 石	"	"	"	"	
"	"	"	m ³	1위	
"	"	"	m ²	"	
돌쌓기 및 돌붙임	"	"	m ³	"	
"	"	"	m ²	"	
捨 石	"	"	m ³	"	
다 들 돌(切石·板石)	"	"	개	2위	
벽 돌	mm	"	"	단위한	
불 록	"	"	"	"	
시 멘 트			kg	"	
모 르 터			m ³	2위	대가표에서는 3위까지 이하 버림
콘 크 리 트			m ³	2위	
석 분 회			kg	단위한	
화 산 회			"	"	
아 스 팟			"	"	
목 재(판 재)	길이m 폭·두께cm	1위	m ²	2위	
목 재(판 재)	"	1위	m ³	3위	
목 재(자 재)	"	1위	"	"	
합 판	mm	단위한	장	1위	
말 뚝	길이m 지름mm	1위	개	단위한	
철 강 재	mm	단위한	kg	3위	총량표시는 톤으로 하고 단위는 3위까지 이하 버림
용 집 봉	"	"	kg	1위	
구 리 판 · 합 석 류			m ²	2위	
철 녀 근	mm	단위한	kg	단위한	
보 울 트 · 트	"	"	개	"	
적 쇠	"	"	"	"	
철 선 류	mm	1위	kg	2위	
P·C 강 선			"	"	
돌 망 태	길이m 지름cm 높이cm	1위	m	1위	
로 오 프 류	mm	단위한	개	단위한	網目(cm)
못	길이cm	1위	kg	2위	
석 유 · 휘 발 유			ℓ	2위	대가표에서는 3위까지 이하 버림
구 리 스			kg	"	
닝 마			"	"	
화 약 류			"	3위	
뇌 관			개	단위한	대가표에서는 1위까지 이하 버림
도 화 선			m	1위	
석탄·목탄·코유크스			kg	2위	대가표에서는 2위까지 이하 버림

種 目	규 격		단위수량		비 고
	단 위	소 수	단 위	소 수	
산 카 바 이 트 도			ℓ kg ℓ 또는 kg	단위한 1위 2위	
도 관	길이m	2위	m ²	1위	
수 로 연 장	지름mm 두께mm	단위한	개	단위한	
응 강장용벽및 울타리			m	1위	
케 도 부 실			m ²	1위	
시 험 하 중			m	"	
보 오 링			km	3위	
방 수 면 적			톤	단위한	
건 물(면 적)			m	1위	
건물(지붕·벽부치기)			m ²	"	
우 물			"	2위	
가 마 니	깊 이		"	1위	
			m	1위	
			장	단위한	

2-12 금액의 단위표준

설계서의 금액의 단위표준은 다음표와 같고, 1위대가 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 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중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위 1위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위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종 목	단위	지 위 (止位)	비 고
설계서의 총액	원	1,000	이하버림(단, 10,000원 이하의 공사는 100원 이하 버림)
설계서의 소계	원	1	이하버림
설계서의 금액란	원	1	이하버림
1위대가표의 계금	원	1	이하버림
1위대가표의 금액란	원	0.1	이하버림

2-13 재료의 단위 중량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粒徑),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 표와 같이 볼 수 있다. 단, 부순돌 및 조약돌등은 모암의 암질(岩質)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해서는 단위 비중시험에 의한 측정 결과치에 따르거나 문헌에 의한다.

종 별	형 상	단위	중 량	비 고
암 석	화 강 암 산	m ³	2,600kg~2,700kg	자연상태
	사 현 무	"	2,300~2,710	"
	진 조	"	2,400~2,790	"
자 갈	진 조	"	2,700~3,200	"
	습 기	"	1,600~1,800	"
	포 화	"	1,700~1,800	"
모 래	진 조	"	1,800 1,900	"
	습 기	"	1,500~1,700	"
	포 화	"	1,700~1,800	"
점 토	진 조	"	1,800~2,000	"
	습 기	"	1,200~1,700	"
	포 화	"	1,700~1,800	"
점 질 토	보통의 것	"	1,800~1,900	"
	력(礫)이 섞인 것	"	1,500~1,700	"
	력이 섞이고 습한 것	"	1,600~1,800	"
모 래 진 흙		"	1,900~2,100	"
자갈섞인 토사		"	1,700~1,900	"
자갈섞인 모래		"	1,700~2,000	"
호 박 돌		"	1,900~2,100	"
사 석		"	1,800~2,000	"
조 약 돌		"	2,000	"
주 철		"	1,700	"
강·주강단철		"	7,250	"
연 철		"	7,850	"
놋 쇠		"	7,800	"
구 리		"	8,400	"
남		"	8,900kg	"
목 재	생송재(生松材)	"	11,400	"
소 나 무	건재(乾材)	"	800	"
소나무(적송)	건재	"	580	"
미 송	"	"	590	"
시 멘 트		"	420~700	"
"		"	3,150	"
"		"	1,500	자연상태
철근콘크리트		"	2,400	"
시멘트모르타		"	2,100	"
역청포장		"	2,200	"
역청재(방수용)		"	1,100	"
물		"	1,000	"
해 수		"	1,030	"
눈	분말상(粉末狀)	"	160	"
눈	동 결(凍結)	"	480	"
눈	수분포화	"	800	"

2-14 화물 자동차의 적재량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중량적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實測値)에 의하며, 6톤 하물 자동차의 품종별 적재량은 다음표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종 별	규격(적재물의 모양)	단위	적 재 량
목재(원목)	길이가 긴 것은 날개	m ³	7.7
" (제재목)	"	"	9.0
경 유	200ℓ 드람	드람	30
휘 발 유	"	"	30
아 스 팔 트	200kg 드람	"	24
새 끼	12mm 9.4kg	다발	480
벽 돌		개	3,000
기 와		매	3,060
콘크리트관	φ=25CM, L=1m	본	60
"	φ=30CM, L=1m	본	52
"	φ=45CM, L=1m	"	25
"	φ=60CM, L=1m	"	12-16
"	φ=90CM, L=1m	"	4-9
"	φ=100CM, L=1m	"	3-6
"	φ=120CM, L=1m	"	3-6
"	φ=150CM, L=1m	"	3-6
보 도 블 록	30CM×30×6	개	525-600
건 치 돌	뒷길이 45CM	"	100

상기 표에서의 표준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며 적재 운반기계는 상기 허용적재량을 초과적재할 수 없으며, 허용 적재용량으로도 초과 적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운반 적재량도 운반로종별(公道, 私道)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15. 잡비율(雜費率)

제잡비율(諸雜費率)은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재무회계예규”에 규정한 한도내에서 계상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잡비란 순공사비를 제외한 현장정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말하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8조(예정가격에 계상되는 제잡비율)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제잡비율은 다음 각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

- ① 건축, 토목공사 100분의 30
- ② 기계·전기공사 100분의 25
- ③ 물품의 구입 100분의 17

또 재무회계예규 1201. 04-2 (시설공사 예정가격에 계상되는 제잡비율 결정)에 의하면 공사비 별 계약방법 별로 제잡비율을 다음표와 같이 조정하게 되어 있다.

※ 적용방식

$$\text{예정가격} = (\text{재료비} + \text{노무비} + \text{제역무비}) \times (1 + \text{제잡비율})$$

제잡비율 적용상의 유의점

- ① 건설기계의 손료에 대하여는 기계손료의 15%이내의

제잡비율

계약방법 공사구분 공사비	경쟁계약		수의계약	
	토목·건축	전기·기계	토목·건축	전기·기계
5백만원까지	30%	25%	25%	20%
10백만원까지	29.5	24	24.5	19
20만백원까지	29	23	24	18
35백만원까지	28.5		23.5	
50 "	28	22	23	17
75 "	27.5		22.5	
100 "	27		22	
200백만원	26.5	22	21.5	17
200 "초과	26		21	

잡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계속공사로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잡비율에 전차 경쟁 입찰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된 금액과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율 이하를 적용한다.

③ 분리 시공하기 곤란한 구조를 계속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명 경쟁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명업체 중 전차 시공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시의 적용 제잡비율에 전차 경쟁입찰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과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율 이하를 적용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정부 계약 및 지출요령, 재무부 회계예규 120/.01~79(77.620)에 의하면,

① 부가가치세 시행 이후에 적용할 제잡비율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잡비율에서 구영업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영업세율(종전의 대금지급시에 구영업세 원천징수율)을 공제한 율에 의한다. 다만 시설공사 예정가격에 적용할 제잡비율은 회계예규 120/.04-2 (70.4.1) “시설공사 예정가격에 계상되는 제잡비율 결정”상의 제잡비율에서 해당하는 영업세율을 공제한 율에 의한다.

적용방식에

구 분	제작비율 (경쟁계약)	구영업 세 율	산 출	적용잡 비 율
토목·건축공사 (5백만원까지)	30%	2%	30% - 2% = 28%	28%

② 부가가치세 시행이후에 정상적인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된 때에는 동 가격에 의하되 동 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③ 이상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액(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2-16. 재료의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공사비 산정을 위한 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재무부장관이 정한 고시가격에 의하되, 재무부장관이 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공신력있는 물가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건의 가격 또는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에 대한 문의, 품셈의 신설, 개정 및 보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 건축기준과, 서울·동대문구 휘경동 34-87번지. (9647-027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9677

※ 前回(7월호)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誤字가 있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P	행	오	정
53	우상 6	經濟佛値의 評佛이다.	經濟價値의 評價이다.
53	우상 9	單佛를 곱하여 얻은 工事原佛	單價를 곱하여 얻은 工事原價
53	우하 8	數量에 佛格넣기	數量에 價格넣기
56	좌하 18	마감 工事의 延百積當	마감 工事의 延面積當
56	좌하 14	其他의 境過에	其他의 境遇에
57	상 4	가설공사와 함께 원청업자와 부담것만 으로 하고 하청업자의 가설비는 포함치 않는다.	가설공사와 함께 원청부업자가 부담하는 것만으로 하고, 하청업자의 가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7	하 13	⑥ 屋外附帶設備工事費	屋外附帶設備工事費
58	좌상 9	減價償部費	減價償却費
58	좌상 10	反設備로 處理하고	仮設備로 處理하고

新 刊

要点 建築計劃

著 者 金 眞 一 工博 漢陽工大教授

發 行 普成文化社

印 刷 (株) 새한精版社

總 販 良友堂 74-4292

價 格 2,400 원